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57852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최종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암

담당변호사 임대규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각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선급금 수수

- 1) 원고는 2019. 5. 22. D 주식회사로부터 E 제작을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행을 위해 2019. 9. 10. 피고보조참가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이 하도급 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E 계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E 계약의 공사대금은 총 370,000,000원[= 본계약 310,000,000원 + 설계용역계약 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부가가치세 포함 시 총 407,000,000원)]으로 정하고, 착공일은 각 2019. 9. 16.로, 준공일은 설계용역계약 2019. 12. 30., 본계약 2019. 12. 31.로 정하였다.
- 2) 또한 원고는 2019. 6. 27. F 주식회사로부터 G 제작을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행을 위해 2019. 9. 10. 피고보조참가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4, 이 하도급 계약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G 계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G 계약의 공사대금은 총 450,000,000원[= 본계약 370,000,000원 + 설계용역계약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부가가치세 포함 시 총 495,000,000원)]으로 정하고, 착공일은 각 2019. 9. 16.로, 준공일은 설계용역계약 2019. 12. 30., 본계약 2019. 12. 31.로 정하였다.
- 3) 원고는 2019. 9. 1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E 계약의 선급금 6,600만 원과 이 사건 G 계약의 선급금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보증계약 체결

- 1)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5. 이 사건 E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보험자를 피고로 정하고, 보증금액을 6,6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9. 11. 5.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3). 위 선급금보증계약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정의하였다(제1조).

2)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5. 이 사건 E 계약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보증금액을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금액의 10%)으로, 보증기간을 2019. 9. 10.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위 계약보증계약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주된 의무를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정의하였다(제1조).

3)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4. 이 사건 G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보험자를 피고로 정하고, 보증금액을 8,8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9. 11. 4.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4). 위 선급금보증계약에서의 '보증사고'의 정의는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4)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5. 이 사건 G 계약에 관하여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보증금액을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금액의 10%)으로, 보증기간을 2019. 9. 10.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위 계약보증계약에서의 '보증사고'의 정의는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약 해제 통보 및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E 계약 및 이 사건 G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고 해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6호증).

2) 원고는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기 위해 피고보조참가인 대신 주식회사 H 및 I와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0. 1. 22. 위 각 공사를 마쳤다(갑 제7 내지 11호증).

3) 원고는 2020. 2. 28.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①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약 이행거절로 인하여 주식회사 H 및 I와 다시 공사계약을 맺게 된 데 따라 증가한 공사대금 상당 손해, ② 관련하여 증가한

인건비 기타 비용 상당 손해, ③ 이 사건 G 계약에 관하여 F 주식회사에 대한 이행이 지체된 데 따라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 상당 손해의 각 배상 및 ④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의 효과로서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총 154,000,000원(= 6,600만 원 + 8,800만 원)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3451호, 이하 이 사건을 ‘선행사건’이라고만 한다).

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및 이행

1) 선행사건 법원은 2021. 4. 13.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21.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결정사항 외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별지로 첨부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기재가 없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1.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7. 3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을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며,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며(민법 제429조 제1항), 그 내용 또는 모습에 있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1항, 이상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304472 판결도 참조).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치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이유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참조).

3)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나.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E 계약 및 이 사건 G 계약의 각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각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선급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불이행하였으므로, 각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보험자 피고가 보험채권자 원고에게 각 보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 총 1억 5,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을 거절한 데 따라 원고에 의해 이 사건 E 계약 및 이 사건 G 계약이 각 해제된 사실, 그 원상회복 반환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선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채권자인 원고 사이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행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보증사고의 기초 사실관계로 주장하는 법률관계들은 모두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행사건에서 소송물로 다루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 법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 데 따라 소멸하였고, 동시에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는 내용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부분 보증채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부분 주채무가 소멸한 데 따라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새로운 권리·의무관계로서 형성된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 피고의 보증채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이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의 2021. 7. 30.자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선행사건 법원 조정 과정에서 향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급금반환보증금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이를 감안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하려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표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별도의 표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선급금보증계약상 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계약보증계약상 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또한 원고는 각 계약보증계약의 계약자(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각 계약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자 피고가 보험채권자 원고에게 각 보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계약보증계약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 내지 “주계약 등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을 보증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G 계약 이행 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운 업체를 구하여 F 주식회사에 대한 이행을 마친 것만 납기는 끝내 맞추지 못하게 되어 F 주식회사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지체상금은 위 계약보증계약상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주식회사 H 및 I와 체결한 각 계약서인 갑 제7, 8호증 및 관련 진술서인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주식회사 H 및 I와 원고 사이의 계약금액 전액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주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계약금액이 실제 손해액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가 재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이 비싼 가격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계약금액 전액 또한 위 “실제 손해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미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나. 3)항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보증사고의 기초 사실관계로 주장하는

법률관계들은 모두 이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행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소송물로 다루어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멸·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부분 보증채무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부분 주채무가 소멸한 데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새로운 법률관계로서 형성된 보증채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2021. 7. 30.자 변제로서 마찬가지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한 원고의 선행사건 법원 조정 과정 중 고려사항 관련 주장 또한 앞서 나. 3)항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계약보증계약상 보증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육진, 판사 김재원, 판사 김민기